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규정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3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3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3. 25.
- (3) 회 부 일 : 2026.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생략)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u>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 ----- ----- ----- ----- ----- ----- <u>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 추이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음.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는 17년이었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8년이었음. 이는 OECD 주요국 중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고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로 들어서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진전 속도 >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 도달연도				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7%→14%)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14%→20%)	20%→30% 소요연수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30%			
미국	1942	2014	2029	2093	72	15	64
영국	1929	1975	2025	2073	46	50	48
스웨덴	1887	1972	2020	2078	85	48	58
덴마크	1925	1978	2020	2096	53	42	76
독일	1932	1972	2008	2046	40	36	38
프랑스	1864	1979	2018	2063	115	39	45
이탈리아	1927	1999	2007	2033	61	19	26
일본	1969	1994	2004	2023	25	10	19
대한민국	2000	2017	2025	2035	17	8	10

※ 자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인적 자원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 현행법 제9조제1항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역할에 따라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¹⁾ 아울러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 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지자체의 장으로 하고 있고,²⁾ 제5조제1항은 지자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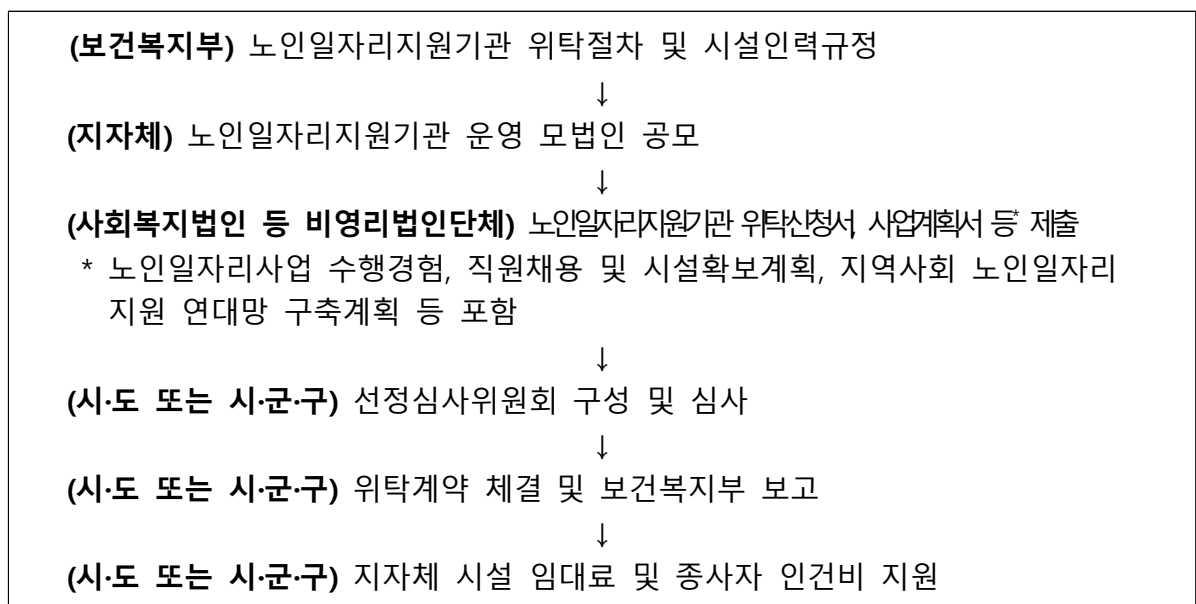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2)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종으로서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는 운영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⁴⁾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 절차 >



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4)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 명칭사용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명칭 사용 가능
예시 □□ 시니어클럽, (서울)종로시니어클럽 등

이에 따라 2026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220개소 기관 중 217개소가 시니어클럽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3개소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지자체(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개소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명칭 사용 현황 >

(2026. 9월 기준, 단위: 개소)

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기타***
217	10	2	1

*지자체(인천광역시) 직접 설치·운영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연수구)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남동구)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부평구)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계양구)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영종구) 영종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제물포구) 제물포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서해구) 서해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검단구) 검단구노인인력개발센터(직원 모집 중)

** (경북 구미시)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자료: 보건복지부

< 시니어클럽 명칭 사용 법인·단체 현황 >

(2026. 9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법인 외 단체**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217	134	70	9	4

*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 시설관리공단, 사회적협동조합

※ 자료: 보건복지부

□ 관련 지침에서 시니어 클럽 명칭 사용을 안내하고 있고, 실제 운영 위탁을 받은 대부분의 법인·단체 등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실무에 맞게 법 문언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지자체가 법인, 단체 등에 위탁시 “○○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라는 점을 지침으로 일관되게 안내·운영해 왔고,
- 2024년 법 제정시 포함된 해당의 문구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법령 문언을 행정 처리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고자 ‘명칭’을 담는 방안을 제안함.
- 대한노인회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기관과 수행주체를 연계함에 있어 형평성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실제 현장에서 대표적 수행주체로 기능하므로 이 법 제1항제3호에 대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의 경우 대한노인회 등으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추가 요구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연혁
-------------	-----------------------

- 2001년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Community Senior Club) 시범 사업 실시
 - 시범사업기관 5개소 지정
- 2004년 : 명칭변경
 - 명칭변경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2005년 : 지방이양, 명칭변경 및 법률규정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변경 : 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05년도 지침)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법률* 삽입
 -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령 17조의3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2011년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법률* 삽입
 - *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2013년 : 노인복지시설 규정*

*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2021년 : 지정 → 운영위탁 변경

-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정이 아닌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또한 '21년부터 기간(5년)을 정해 운영 위탁해야 함을 사업지침으로 규정*

* '21년 이전부터 위탁운영 중인 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후 지침적용
'21년 이전 지정을 통해 운영 중인 기관은 '21년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기관으로 봄

○ 2024년 :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규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삭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